

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

제 정 2019.04.30

제1조(목적) 이 기준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으로 채무증권, 국내외 상장지분증권 및 국내외장내파생상품 등의 매매를 위한 투자중개업자의 선정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투자중개업자 평가 기준) 회사는 투자중개업자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- ① 조사 분석 서비스의 유용성
 1. 리서치 자료, 제공된 투자정보의 질
 2. 세미나, 기업방문 주선 능력
- ② 주문집행능력
 1. 차입, 대량매매, 주문집행의 정확성, 신속성 및 사고건수
- ③ 평가는 담당자별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100점을 투자중개업자별로 안분 배분한다.

제3조(평가의 방법) ① 평가는 매 분기마다 실시한다.

- ② 거래중개회사의 평가 및 선정은 운용 담당부서 및 매매 담당부서의 임직원 중 2인 이상이 수행한다.
- ③ 평가 및 선정 담당자들은 평가점수 결과에 따라 각 중개회사에 대해 주문금액 총액에 대한 배분비율을 정할 수 있다. 다만, 투자자산별 운용규모가 미미하여 중개사 선정 및 배분의 효율성이 낮다고 준법감시인이 판단하는 투자자산에 대해서는 중개회사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4조(평가의 수행 및 처리절차) ① 중개회사의 선정결과는 준법감시인에게 즉시 통지한다.

- ② 준법감시인은 매 분기 종료 후 선정결과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③ 선정결과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사유 및 방안을 작성하여 준법감시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중개회사로 선정된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기관징계, 매매정보유출, 주문실수, 전산장애발생 등의 중대한 오류가 발생한 중개회사에 대해서는 매매 중단을 할 수 있다. 단, 이 경우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

제5조(특례) 채권 및 파생상품 등 수수료 체계와 거래의 방법이 주식매매와 현저히 다른 유가증권의 매매위탁은 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되, 중개회사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매매위탁하여야 한다.

제6조(공시 및 보관) 회사는 본 기준을 당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.

② 중개회사 평가기준표 및 그 관련서류는 5년간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기준은 2019년 4월 30일부터 제정·시행한다.

